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 직업병 위험, 남의 일 아니었다

금속노조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한 현장 실태조사를 2008년 2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했다. 이는 화학물질 취급과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실태조사팀은 3~5인이 한 팀으로 해서,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완성4사와 STX조선, 파카한일유압, 동우기계 등 대기업사업장과 중소 영세사업장 60개사를 골고루 조사했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노조는 현재 개선 및 노사협의회를 추진하고 있다.



얼마만큼 더 속으며 일해야 하는가?

금속노조 내 작업현장은 놀랍게도 심각한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동안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을 속여 왔고, 직업병의 위험도 알리지 않았다. 60개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 실태조사에서 전체 사업장이 무차별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었고, 지도 책임이 있는 노동부 또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노동부, 무차별적 위법행위 눈감아주었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무차별적인 위법사항을 회피하고 면죄부를 부여했다. 한 예로 노조 조사과정에서 이원정공은 200여건, 동우기계는 50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원정공의 경우 고작 1건의 위반사항 지적과 9만원의 과태료, 동우기계 또한 1건의 위반사항과 5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축소 종결해버렸다.

노조, 노동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감사원에 고발

노조는 지난 10월22일 전·현직 노동부장관과 지방노동관서장 60여명에 대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를 물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또 기자회견을 통해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한 제도와 정책을 바로 세워가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앞으로 노조는 조합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화학물질 취급 실태조사 사업장 명단

조사일정	해당지부	사업장
2월18일~22일	인천	창성, KM&I, 동광기연, 대원강업, 두산인프라코어
2월25일~29일	대전충북	KL테크, 유성기업(영동), 현대오토넷
3월3일~7일	경남	세신버팔로, 효성, 위아, S&T중공업, 현대모비스, STX조선, 대림자동차, 동우기계
3월10일~14일	충남	엠시트, 세영테크, 유성기업(아산), 다이모스, 세정, 위니아만도(모던)
3월17일~19일	경주	오리엔스, 한국펄저, KCO에너지, DSC, 엠시트, 일진베어링, 에코플라스틱, 발레오만도, 광진, IHL, 이너지, 대림플라스틱, 상희금속
3월20일~21일	대구	삼우정밀, 상신브레이크,
3월24일~26일	광주전남,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광주), 금호타이어(곡성), 캐리어, 현대하이스코, 기아자동차(광주)
3월27일~28일	전북	대우상용차, 일성테크, MP테크, 한국펄저, 영화금속, 태형, 만도(익산)
4월7일~11일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평택)
4월14일~18일	만도, 부양	만도평택, 이원정공, 롤스로이스, 한진중공업
4월21일~25일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아산위원회,
4월28일~5월2일	경기, 대우자동차	대원산업 평택, 케피코, 파카한일유압, 한라공조 평택, 대우자동차 부평

우리 사업장은 안전한가?



노조 앞장서고 간부들이 나서서 노동안전 바로잡자

우리 사업장은 안전한가? 나는 안전한가?
60개 사업장 조사결과 발암물질을 사용치 않는 사업장은 없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에게 발암물질임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노동자 보호조치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우리 조합원들과 노동자들이 직업병의 위협 속에서 건강을 착취당하며 노동하고 있었다는데 우리는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나는 안전한가?

각 지부 지회가 나서야 한다

지금 당장 공장의 각 부서와 공정에서는 화학물질 사용 목록표를 작성하고 취급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노동자에게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 2세에게 영향을 미치는 '생식독성 물질', 각종 직업병을 유발하는 '신경독성물질'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허위와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 왔던 잘못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을 현장이 나서서 똑바로 챙길 수 있도록 하자.

사용자의 위법사항 실태

세부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위반 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①항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72조2항)	60개 사업장(100%)
	일부 게시 비치한 사업장이 있었으나, 법적요건에 맞게 작성 되지 않음.	
물질안전보건자료 허위·누락 작성 여부	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①항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법72조2항)	59개 사업장(98%)
	사업장별 무작위 10~20종의 MSDS를 수거 분석함. 기아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 유해성과 독성정보를 허위 누락 작성하고 있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③항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법72조2항)	60개 사업장 (100%)
	사업장별 교육 현황 확인 함. MSDS 관련 일반적 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있었으나, 부서에서 노동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직접 취급하는 물질의 세부적인 유해성과 독성정보를 근거를 세부적 MSDS 교육이 실시된 경우는 없었음.	
안전·보건표지 부착	법 제12조(안전표지의 부착 등) 500만원이하과태료	60개 사업장 (100%)
	형식적으로 몇 군데 안전보건 표지를 부착한 경우는 있었으나, 법규정에 맞게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를 전체적으로 부착한 경우는 없었음.	
경고표지 부착	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③항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법72조2항)	60개 사업장 (100%)
	원 부자재 및 화학물질을 덜어 사용하는 반응기에 일부 경고표시를 부착한 경우는 있었으나, 법규정에 맞게 전체적으로 경고표지를 부착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없었음.	
위험물질 보관	법 제23조(안전상의조치) 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위험물등의 보관) 위반	60개 사업장 (100%)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법 제24조(보건상의조치) 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0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보건규칙 제177조(작업장의 바닥) 보건규칙 제179조(누출의 방지조치) 보건규칙 제182조(작업수칙) 보건규칙 제185조(발암물질의 취급일지 작성) 보건규칙 제190조(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저장) 보건규칙 제191조 (빈 용기 등의 관리) 보건규칙 제193조(출입금지 등) 보건규칙 제196조 (유해성의 주지)	
공정밀폐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및 유지	법 제24조(보건상의조치) 위반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60개 사업장 (100%)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적정 제어풍속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50% 미만이었음. 발암물질 취급부서임에도 국소배기장치 조차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사업장에서 발견되었음.	